

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on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Joo, Shin-Ha

Dept. of Horticulture, Biotechnology &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landscape system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mportance and achievement of various landscape systems, and examined the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officers in landscape plan, landscape project, landscape agreement, landscape reviews and landscape committees, landscape ordinance, and landscape administr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verall, the landscape administration system was highly interested, and it was also positive about the utility of the landscape law and the landscape charter.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IPA, the landscape plan and the landscape policy plan need to be intensively improved.

2. The landscape plan is mostly used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scenery review or complaint request, but about 10.8%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did not refer it at all, so it is urgent to make the contents of the landscape plan real and improve the performance. Although many officers thought that less than 18 months would be quite enough for landscape plans, bu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is duration issue.

3. In order to improve landscape projects and landscape agreements, it seems that budget securing, experts, and promo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improved first.

4.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bout overall landscape law and systems of landscape review committe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ndscape review and the landscape committee.

5.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personnel recruitment is required for landscape ordinance and landscape administration, and it is also found that many officers also have a great burden in making subjective judgment as the person in charge.

There could be a positive bias in the results of the study, because the survey was conducted only for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But the result will be helpful to look at the overall tendency of the landscape system. I hope that it will help improve the landscape system in the future much more realistic.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17)).

Corresponding author: Shin-Ha Joo, Dept. of Horticulture, Biotechnology &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01797, Korea, Tel.: +82-2-970-5619, E-mail: sinhajoo@swu.ac.kr

Key Words: Landscape Plan, Landscape Agreement, Landscape Project, Landscape Ordinance, Landscape Review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현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이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회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력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경관계획, 경관협정, 경관사업, 경관조례, 경관심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기준에 미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던 '경관'은 실제하는 공공재로서 법과 행정의 구체적 대상이 되었다(Korean Landscape Council, 2008). 법제정 이후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다. 2012년 2월까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관계획을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인 곳은 90개로 약 37%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를 지정하였고,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에서 경관계획이 의무화가 되면서 더 많은 지자체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회도 강화되어 본격적인 경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까지 경관계획 의무 수립 지자체(10만명 초과 시·군) 85개 중에서

66개로 약 77.6%의 지자체에서 이미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76개 지자체(특·광역시, 도, 시·군) 중 123곳이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18개 지자체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6개 지자체에서는 경관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a).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관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최근에는 대국민 경관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현장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보완과 경관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경관관련 행정은 이러한 변화의 폭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관담당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서도 경관관련 '행정', '교육 및 연구' 관련 시책은 5%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 중에서도 경관전담조직 구성, 경관위원회 운영 등 직접적인 '경관행정업무(32%)'를 지원하는 비중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a).

한편, 기존 경관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경관대상이나 유형에 관한 평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경관행정의 중요한 주체인 경관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경관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Lee and Lee(2008)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경관법 제정 이전에 관한 사항과 경관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현황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관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는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된 바 있으나(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b), 경관제도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분석이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관계획의 수립과 실행,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등 전반적인 경관 관련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경관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경관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관에 대한 연구 중 경관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et al.*(2008)은 경관법 제정 이전,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지자체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경관계획 수립지침과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경관계획 작성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Joo and Kim(2011)은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경관계획 내 각 부문 간 연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Kwon and Kim(2012)는 서울시 각 구의 경관 관련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적 정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경관법 제정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경관법 제정 논의가 가시화된 2004년부터 2007년에는 주로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이나, 국외 사례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경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2.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경관대상이나 유형에 대한 인식조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도시민의 경관인식, 소도시 아파트 특성 및 경관에 대한 인식, 상업가도에 대한 경관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Son and Yoon, 2011; Kim, 2011; Bahk *et al.*, 2010; Kim, *et al.*, 2007; Hwang and Ryu, 2001; Do and Hwang, 2014).

한편, 같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차를 두고 경관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Joo and Kim, 2012)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10년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경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나, 경관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정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목적과 가장 유사한 연구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지자체 공무원 경관관련 인식조사를 들 수 있다(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b). 이 조사에서는 경관법제도에 관한 전반적 인식,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행정 등 경관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공무원 경관인식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식을 분석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특정 경관대상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가 경관담당 공무원의 경관인식변화를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활용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관관련 제도별로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중요도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여 제도별로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

요도-성취도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중요도-성취도분석은 Figure 1과 같이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 중요도-성취도분석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4분면에 대해 각각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이 매트릭스에 의해 정해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Martilla and James, 1977).

경관분야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경관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경관계획 각 단계별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Joo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시 기본구상이 전체 경관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낮았으나, 비교적 잘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대조적으로 세부항목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구상 중 미래상 설정은 평균 이상의 중요도를 지니는데 반해,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2 참조). 첫째, 경관제도와 관련한 인식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식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경관법과 제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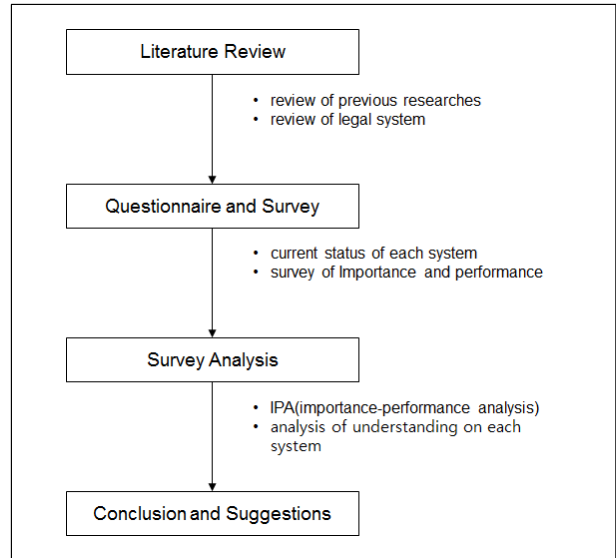


Figure 2. The process of research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경관계획,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 개별 경관제도별 인식을 분석하였다. 경관관련 제도의 구분은 기존 연구 (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b)와 경관법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경관협정은 넓은 의미로 보면,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는 모든 행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좁은 의미로 다른 경관 관련 제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담당 공무원이 운영하는 행정업무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는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관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활용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경관법 제정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경관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관담당자의 인식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경관행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경관제도별 중요도 및 성취도 인식에 관한 사항, 각 경관제도별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사항 등을 질문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관관련 제도는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관심의 주관점 교육에 참석한 전국 경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54명의 공무원이 참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설문결과는 주로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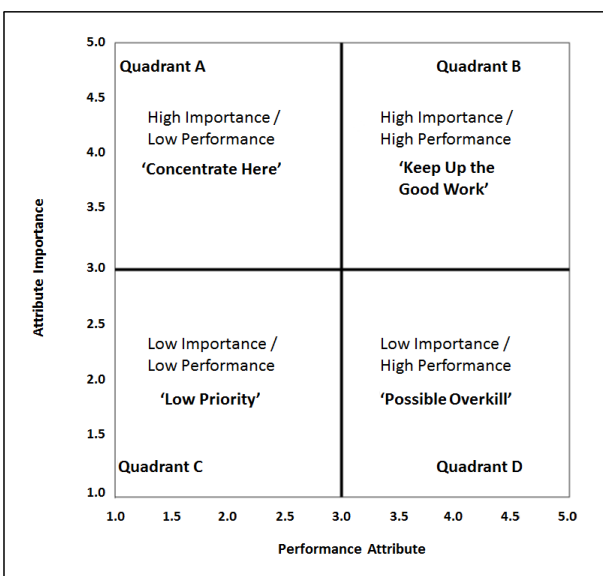


Figure 1. Importance-Performance grid with attribute ratings (source : Martilla and James, 1977:78)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ypes	Sub types	Frequency	Rate(%)
Position	Regional local government	23	16.1
	Basic local government	99	69.2
	Public enterprise	18	12.6
	Etc	3	2.1
	Missing	11	-
Sex	Male	99	69.2
	Female	44	30.8
	Missing	11	-
Age	20s	13	9.0
	30s	44	30.3
	40s	47	32.4
	50s	39	26.9
	Over 60	2	1.4
	Missing	9	-

식을 파악하였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 등의 담당 공무원 소속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거나, 각 경관제도별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경관제도의 실행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er 17.0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현지 경관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과정을 보완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경관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경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는 경관행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관행정 및 제도(계획, 사업, 협정, 심의, 위원회, 조례 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92로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법 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3.57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국토경관현장이 향후 경관정책에 어떤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3.78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전반적인 경관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관법의 효과나 경관현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 등 응답자 소속에 따라 다소 다른 응답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참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

Table 2. Understanding on landscape administration and system

Type	Regional Gov.	Basic local Gov.	Public enterprise	Etc	Total	ANOVA		
						d.f.	F	Sig.
Interest in landscape systems	4.17	3.93	3.61	3.67	3.92	3	1.397	0.246
Effect of landscape law	3.70	3.56	3.50	3.33	3.57	3	0.408	0.748
Impact of landscape charter	3.57	3.75	4.11	4.33	3.78	3	1.341	0.264

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경관행정 등으로 구분하고, 각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제도로는 경관계획(4.19)과 경관정책기본계획(4.15)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서도 모두 3.6 이상으로 평가되어 경관관련 각 제도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경관협정(3.62)이나, 경관행정(3.64)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3 참조). 특히 경관협정이나, 경관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ANOVA 결과(d.f.=7, F=7.991, sig.=0.000)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참조).

한편, 현재 경관관련 제도들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각 제도에 대한 성취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반해서, 성취도는 5점 척도에서 최저 2.24에서 최고 3.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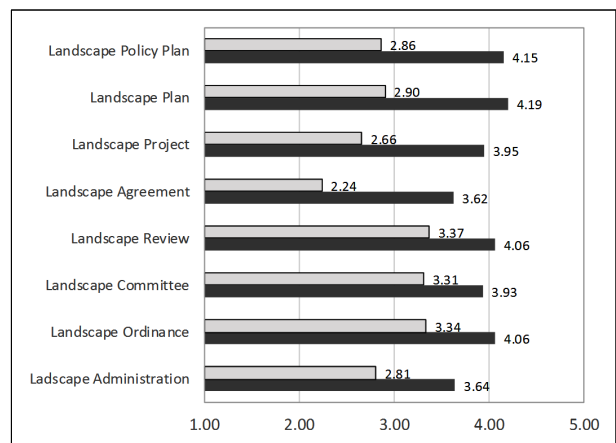


Figure 3. The IPA result of landscape systems
Legend: □ Performance ■ Importance

Table 3. Importance of landscape systems (Duncan)

Type	N	Subset for alpha=0,05		
		1	2	3
Landscape agreement	149	3,62		
Landscape administration	145	3,64		
Landscape committee	149		3,93	
Landscape project	148		3,95	
Landscape review	150		4,06	4,06
Landscape ordinance	149		4,06	4,06
Landscape policy plan	146		4,15	4,15
Landscape plan	149			4,19
Sig.		,873	,071	,260

식되는 것은, 경관심의(3,37), 경관조례(3,34), 경관위원회(3,3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관협정은 2,24로 가장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평균차이는 ANOVA 결과(d.f.=7, F=22.674, sig.=0.000)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참조).

경관관련 제도별 중요도와 성취도 조사를 중간 값인 3.0을 중심으로 한 4개 실행격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경관조례는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아 '유지'에 해당하는 1사분면에 해당하여 중요도에 걸 맞는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경관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행정 등은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는 낮아, '집중'이 필요한 2사분면에 해당하여, 경관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인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이 2사분면으로 구분되어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Figure 4 참조).

모든 제도에 대해서 중요도는 중간 값 이상으로 평가하여 '저순위'인 3사분면이나, '과잉'인 4사분면으로 구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경관관련 제도가 경

Table 4. The performance of landscape systems (Duncan)

Type	N	Subset for alpha=0,05		
		1	2	3
Landscape agreement	133	2,24		
Landscape project	135		2,66	
Landscape administration	124		2,81	
Landscape policy plan	131		2,86	
Landscape plan	136		2,90	
Landscape committee	135			3,31
Landscape ordinance	134			3,34
Landscape review	135			3,37
Sig.		1,000	,054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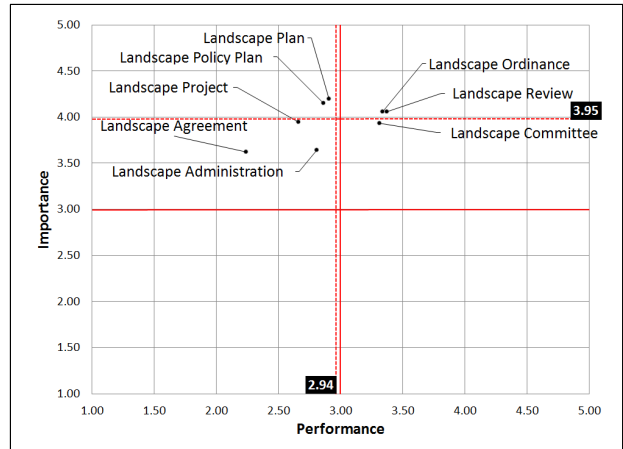


Figure 4. IPA matrix by landscape systems

관심의와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상대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행격자 구분을 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 경관조례와 경관심의가 구분되고, 높은 중요도와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2사분면에는 경관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이 구분되었다. 3사분면에는 경관사업, 경관협정과 경관행정이, 4사분면에는 경관위원회가 구분되었다. 상대적으로는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에 대한 인식

다음은 지자체 경관계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경관계획 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관심의 또는 민원 요청에 대한 대응(56.1%)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타 부서와의 협조는 29.1%, 예산기안인 경우, 16.2%가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비록 응답률은 낮았지만, 아직도 경관계획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관계획이 현재는 경관심의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경관행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므로,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계획 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관부문별계획(가이드라인)을 53.2%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관기본계획(39.6%),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33.1%), 실행계획(3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관기본구상(11.7%)과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13.6%)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참조). 경관기본구상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과 구

Table 5. Utilizations of landscape planning report(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Budget draft	24	14.5	16.2
Response to complaints	83	50.0	56.1
Cooperation with others	43	25.9	29.1
Almost never reviewed	16	9.6	10.8
Total	166	100.0	112.2

Table 6. Importance of each landscape planning steps (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Survey and analysis	51	18.0	33.1
Basic concept	18	6.3	11.7
Landscape master plan	61	21.5	39.6
Plan for intensive landscape management area	21	7.4	13.6
Guidelines	82	28.9	53.2
Action plan	51	18.0	33.1
Total	284	100.0	184.4

분이 잘 되지 않는 계획단계상의 특징 때문에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계획에서 실행되지 않아서,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관부문별계획과 경관자원조사,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o, et al. 2008).

경관계획 내용이 실행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로는 실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51.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43.8%), 예산확보의 어려움(34.6%)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효율적인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역시 전문 인력, 제도적 지원, 예산 확보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들의 경관인식 부족(28.8%), 부서 간 비협조(24.8%)와 같이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경관계획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관지구 지정 및 운영권한 부재(9.8%)와 경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14.4%)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속적인 경관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Table 7 참조).

Table 7. The difficulties of implementation of landscape plan (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Impractical and difficult to implement.	32	9.1	20.9
Hard to get a budget.	53	15.1	34.6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79	22.6	51.6
Lack institutional devices.	67	19.1	43.8
No permission to designate scenery districts.	15	4.3	9.8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andscape system.	22	6.3	14.4
Difficult to cooperate with other departments.	38	10.9	24.8
Lack of awareness of citizen's landscape.	44	12.6	28.8
Total	350	100.0	228.8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12개월 미만인 27.2%, 12~15개월이 26.5%, 15~18개월이 24.5%, 18개월 이상이 21.9%로 조사되었다. 즉, 응답자의 53.7%가 15개월 미만, 88.1%가 18개월 미만이 적정 기간이라고 인식한 결과이다. 다른 계획들이 12개월에서 18개월에 수립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관계획의 용역기간도 12~18개월 정도가 적정하다는 인식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5 참조).

그러나 계절적 영향을 고려한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계획내용이 다 마련된 이후에도 공청회, 회의의견 검토,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18개월이라는 경관계획 수립 기간은 매우 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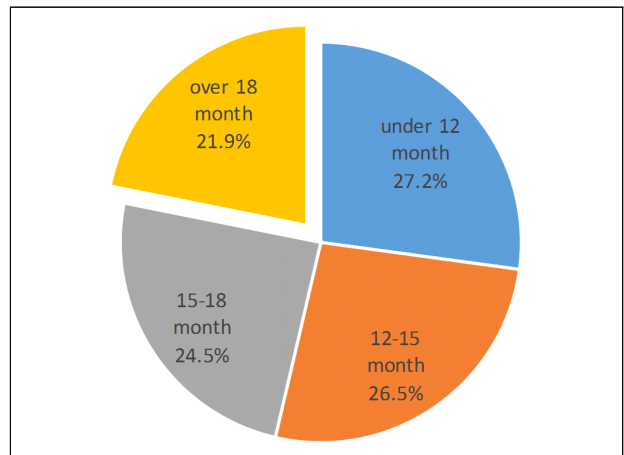


Figure 5. Appropriate duration for landscape planning

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 경관계획에서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용역비 산정기준이 용역기간과 연동되어 있고, 담당자의 업무담당 기간이 통상 2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8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적정하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경관계획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기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현재 작성되고 있는 경관계획의 완성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2.68로 조사되어 계획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분석된 경관계획의 성취도 역시 2.90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 소속 구분에 따른 차이는 ANOVA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NOVA, d.f.=3, $F=0.518$, sig.=0.670). 경관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Table 3 참조), 완성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경관계획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적정 경관계획 수립기간에 대한 조사에서 18개월 미만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경관계획 완성도가 낮다고 인식한 결과와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도 진행하였다. 경관사업이 보다 잘 진행되기 위한 보완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51.3%), 시행 이후 관리체계 마련(44.7%), 예산확보(41.4%)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부서 협조(28.3%), 추진과정 간소화(20.4%), 인센티브 제공(11.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Table 8 참조).

경관협정이 보다 잘 진행되기 위한 보완사항에 대한 질문

Table 8. Improvement for the landscape projects(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	
Budget for landscape projects	63	20.9	41.4
Organization for project	78	25.9	51.3
Management system after implementation	68	22.6	44.7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43	14.3	28.3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31	10.3	20.4
Incentives based on results	18	6.0	11.8
Total	301	100.0	198.0

에는 협정추진을 위한 전문가(47.3%), 협정 지원을 위한 재원(47.3%), 주민대상 경관 교육 프로그램(41.8%) 등이 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정체결 과정 간소화(25.3%), 주민 인센티브(24.0%), 타부서 협조(1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Table 9 참조).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모두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여자 인센티브, 절차 간소화, 타 부서와의 협조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이 경관계획 내용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예산과 조직정비, 전문가 지원 등이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4.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에 대한 인식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먼저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기준 또는 사례집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뒤로 경관위원의 전문성 강화(47.9%), 경관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공(45.2%), 경관심의 자료 작성 교육(3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타부서와의 협조(28.3%), 인센티브 제도(11.8%) 등과 같은 행정관련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Table 10 참조).

경관담당 공무원들은 조직이나 제도적인 지원보다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이 개별 분야에 대해서

Table 9. Improvement for the landscape agreement(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61	21.1	41.8
Expert support for the promotion	69	23.9	47.3
Funding for the agreement	63	21.8	43.2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24	8.3	16.4
Simplification of agreement process	37	12.8	25.3
Incentives for the implementation	35	12.1	24.0
Total	301	100.0	198.0

Table 10. Improvement for the landscape review and landscape committee(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To provide specific re-view criteria or casebook	103	33.9	70.5
Education of landscape committee members	70	23.0	47.9
Education to prepare re-view documents	44	14.5	30.1
Manual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66	21.7	45.2
To adjust timing of re-view	10	3.3	6.8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11	3.6	7.5
Total	304	100.0	208.2

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경관법이나 경관관련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실무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심의 대상으로 중요한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대규모 개발사업(40.3%), 대규모 건축물(29.2%), 사회기반시설(25.7%), 공공건축물(16.7%)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았다. 주로 대규모 시설이나 사업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물리적인 대상 외에는 경관계획(17.4%)이 가장 중요한 경관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1 참조).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운영에 대한 인식

경관조례 제정 및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한 질문도 진행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사항은 조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53.1%)로 나타났는데, 조례 제정을 위한 기술적인 교육이나 지원보다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과 같은 지원이 경관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2 참조).

그 밖에 경관업무 담당하면서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에 대한 어려움(53.5%)과 예산, 정책, 조직에서의 낮은 우선순위(52.8%) 등을 꼽았다. 이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지 못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경관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특히 담당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을 경우, 감사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주관적 판단을 주저하게 되는 큰 이유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담당자가 경관에 대해 충분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거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업무 전반에 걸친 매뉴얼이나 지표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Table 11. Priority of scenery review(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Large-scale building	42	16.9	29.2
Small-scale building	10	4.0	6.9
Public building	24	9.6	16.7
Large-scale development	58	23.3	40.3
Small-scale development	10	4.0	6.9
SOC	37	14.9	25.7
Buildings around cultural assets	21	8.4	14.6
Landscape projects	8	3.2	5.6
Landscape agreement	2	0.8	1.4
Landscape plan	25	10.0	17.4
Landscape ordinance	12	4.8	8.3
Total	249	100.0	172.9

Table 12. Improvement for the landscape ordinance (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Education for ordinance	34	15.5	23.8
Ordinance casebook	55	25.0	38.5
Administrative support for operation (recruitment)	76	34.5	53.1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55	25.0	38.5
Total	220	100.0	153.8

을 시사한다.

또한 경관부서가 행정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 정책, 조직 등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향후 경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경관위원회 운영의 어려움(11.8%), 인센티브 부족(13.2%), 관련부서 협의 어려움(16.0%)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3 참조).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역시 경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66.7%)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조사된 경관업무 어려움에 대한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관담당 부서 위계강화 및 인력 보충(35.4%), 경관담당자 교육 프로그램(34.7%)에 대한 높은 응답률도 역시 행정조직 내에서 위상을 높이고,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Table 14 참조).

Table 13. Difficulties in landscape administration(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andscape	44	15.4	30.6
Too much work	30	10.5	20.8
Difficult to make subjective judgment	77	26.9	53.5
Operation of the landscape committee	17	5.9	11.8
Difficult to negotiate with many departments	23	8.0	16.0
Lack of reward or incentive	19	6.6	13.2
Low priority in budget, policy and organization	76	26.6	52.8
Total	286	100.0	198.6

Table 14. Improvement of the landscape administration(multiple response)

Type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Education for landscape officials	50	16.4	34.7
To increase budget for landscape administration	55	18.1	38.2
To provide incentives to regulation	25	8.2	17.4
To specialize in professional knowledge	96	31.6	66.7
To establish the landscape support center	27	8.9	18.8
Promotion and recruitment of department	51	16.8	35.4
Total	304	100.0	211.1

이러한 결과는 경관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과 행정조직 상에서의 위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들이 경관법 및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관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현장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였으나, 성취도 측면에서는 각 제도별로 다른 평가를 보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이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행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제도적 보완 필요, 예산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절차 간소화, 타부서와의 협조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심외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분야에 대한 전문성 외에 경관법이나 경관관련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실무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력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관담당 공무원들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문항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 연구(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b)의 결과¹⁾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의 교육과 홍보 등으로 경관법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부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 각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제부터는 경관관련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보다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순환보직방식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담당자가 경관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일

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도 경관관련 업무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관법 개정 이후 경관심의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정작 경관심의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 외에 경관법과 경관계획, 특히 경관심의의 역할과 범위,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등과 같은 경관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경관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심의위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관담당 공무원들은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작 결과물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관계획에 대한 질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립기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경관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계절별 경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용역비, 타 계획과의 형평성, 담당자의 성과 달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관계획 수립기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18개월 미만으로 진행되는 경관계획의 수립기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들의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무현장에서 경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경관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경관계획의 내실화,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 경관담당 공무원과 경관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문제점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결과가 경관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54명의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는 본 연구 이전에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경관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거나, 심층인터뷰를 통해 몇몇 문제에 대한 심도 있

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경관관련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 1.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경관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기존 연구에서 응답비율 제시된 결과를 5점 척도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관제도 운용방법의 숙지 정도 3.45,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행력 및 문제점 2.82, 경관심의제도 운영의 효율성 3.07, 경관사업의 효과성 3.54, 경관협정 2.59 등으로 조사되었다.

References

1. 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2015a) A Study on establishment of Landscape Policy Plan and Activation of Landscape Agreement. 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2. 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2015b) The Resources of Landscape Policy Plan. Architecture Urban Research Institute.
3. Bahk, H. C., S. C. Lee, S. H. Jeong, S. J. Lee, S. J. Kim and H. J. Park (2010) A study of the shift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n urban landscape of Seoul. *Seoul Studies* 11(4): 33-49.
4. Do, N. Y. and H. J. Hwang(2014)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landscape cognition in Incheon and their effect on the city image: Focused on visitor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2): 147-165.
5. Hwang, J. H. and K. M. Ryu(2001) A study on the perceptual differences of streetscape between two groups at the commercial street, Seongangil, in Cheongju.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Urban Design* 2(1): 7-22.
6. Joo, S. H. and G. I. Kim(2012)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landscape cognition in Yong-In C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5): 88-99.
7. Joo, S. H. and Y. H. Km(2011) Analysis of guideline and content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4): 1-10.
8. Joo, S. H., W. H. Baek, J. H. Shin and J. H. Mok(2008) The assessment of the landscape planning phases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cused on the landscape planning of development sit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4): 74-82.
9. Kim, H. J., S. U. Oh, J. S. Ryu and W. K. Bae(2008)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ster plan and its contents in Korea. *Proceeding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2008 spring session*: 179-189.
10. Kim, Y. H.(2011) A study on the landscape cognition and urban image of Cheongju citize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7(7): 143-150.
11. Kim, Y. H., J. H. Jeong, Y. D. Jeong, C. G. Yoo and Y. J. Cho(2007)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apartment houses and understanding of landscape located at small town -Centering of Jeollanamdo-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8(1): 43-51.
12. Korean Landscape Council(2008) Law of Landscape & Landscape Planning. Bomundang.
13. Kwon, S. H. and Y. S. Kim(2012) Analysis on the establishm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ityscape plan in Seoul - Focused on cityscape & design plan in Seoul. *Urban Design* 53: 83-103.
14. Lee, J. H. and Y. K. Lee (2008)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Urbanscape law" based on the situations of urbanscape management system by municipal govern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4(5): 229-240.
15. Martilla, J. A., and J. C. James(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2) A Study on the Substantiality of Landscape Review System and Landscape Plann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5) The 1st Land-
scape Policy Pl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Constitution Committee,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341
 19. Son, Y. H, and M. Y. Yoon(2011) Types of green landscapes in a suburban city perceptions of local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5): 101-110.

Received : 06 April, 2017

Revised : 24 April, 2017 (1st)

18 May, 2017 (2nd)

Accepted : 18 May, 2017

3인익명 심사필